

#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일부)

제정 2013. 11. 27.

개정 2016. 11. 29.

개정 2021. 2. 1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산림사업법인의 적격여부 확인

**제2조(처리기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신청인(법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3조(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산림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진단 보고서상의 진단의견(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기업진단자의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한다.
2. 기업진단자는 제9조에서 정의한 진단자를 말한다.

**제5조(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건물 중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다.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4.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사무실은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 건축물 소유자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6. 사무실은 다른 산림사업법인 또는 타 업종의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될 시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산림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②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 및 임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2. 각종 공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대조하여 확인한다.)

③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등록 통보 등)**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산림청, 타 시·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2.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의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등재·관리